寫
6·25動亂 및 기타 事由로 紛失된 法令등原簿의 寫
本은 官報등의 根據書類에 의하여 1963.8.15 作成하였음
總務課長
行政書記官
法令係長
行政事務官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憲法第五十七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稅에 關한 臨時措置令을 玆에 公布한다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二月一日

大統領 李 承 晩 印

國務總理署理 國務委員 申 性 模
國防部長官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國務委員 趙 炳 玉
外務部長官 國務委員 林 炳 穆
財務部長官 國務委員 崔 淳 周
法務部長官 國務委員 金 俊 淵
文教部長官 國務委員 白 樂 濬
農林部長官 國務委員 孔 鎭 恒
商工部長官 國務委員 金 勳
社會部長官 國務委員 許 政
保健部長官 國務委員 吳 漢 泳
交通部長官 國務委員 金 錫 寬
遞信部長官 國務委員 張 基 永
李 允 榮

0202
Li 75

大統領令(緊急命令第十一號)

地稅에 關한 臨時措置令

第一條 非常事態繼續中에 있어서는 地稅法第二條、第三條、第三十條、第三十一條、第三十六條、第四十六條、第四十七條、第四十八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左의 規定에 依한다

一、地稅의 課稅標準은 土地의 收穫量또는 賃貸價格으로 한다

前項의 課稅標準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土地의 收穫量은 每年作物의 收穫量을 調査하여 이를 定하고 土地의 賃貸價格은 貸主가 公課修理費其他維持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한 條件으로서 賃貸한 境遇에 貸主의 收得하는 一年分의 金額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二、地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다

(一) 田畓 收穫量의 百分의 六

(二) 前號以外의 土地 賃貸價格의 百分의 十二

三、地稅는 土地의 種目에 따라 地目이 田畓인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現物로써 이를 徵收하고 其他의 地目인 土地에는 現金으로써 이를 徵收한다 但地目이 田畓인 土地로서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現物의 代身 現金으로 이를 徵收할 수 있다

0203

政府는 土地의 異動其他地稅의 徵收에 必要한 事項을 市、邑、面에 通知하여야 한다

四、 地稅는 各納稅義務者에 對하여 同一市、邑、面內의 土地收穫量 또는 賃貸價格의 合計數量 또는 金額에 依하여 算出하여 이를 徵收한다 但各納期稅額이 五升未滿의 數量 또는 百圓未滿인 境遇에는 地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五、 本條第三號의 規定에 依하여 現物을 徵收할 境遇에 있어서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稅徵收法 第十三條 및 第十四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서 特別市、市、邑、面以外의 者에 對하여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의 委託을 받은 者(以下 徵收委託者라 稱한다)는 地稅를 現物로 徵收하여 이를 政府에 納付할 責任을 진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한 地稅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徵收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委託者로부터 徵收한 地稅額 또는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五倍에 相當한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六、 詐僞其他不正한 行爲로 因하여 地稅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逋脫한 者 또는 前號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한 地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는 그 逋脫한 稅額 또는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五倍에 相當한 罰

0204
61 77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政府는 直時로 逋脫한 地稅를 徵收한다
또는 納付하지 아니한 地稅를 徵收한다

七、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分田의 地稅에 限하여 本條第二號및 地稅法第二十一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府에서 調査決定한 賃貸價格의 百分의十二에 相當하는 現金으로서 이를 徵收한다

八、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分、地稅에 限하여 地稅法第二十一條第三項中 納期開始前二十日을 十二月三日로 한다

九、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分의 地稅에 限하여 地稅法第四條의 規定에 依한 納期는 다음과 같다

(一) 畓의 地稅 其年十二月五日부터 翌年一月十一日限

(二) 畓以外의 地稅 翌年二月一日부터 同月二十八日限

第二條 非常事態繼續中에 있어서는 租稅臨時增徵法第三條에 不拘하고 地稅에 對하여서는 前條第二號에 規定하는 稅率百分의六、百分의十二를 各其 百分의十、百分의二十으로 한 境遇에 그 差額에 相當한 稅額을 增徵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0205

寫 6·25動亂 및 기타 事由로 紛失된 法令등原簿의 寫本을 官報등의 根據書類에 의하여 1963.8.15 作成하였음
總務課長 行政書記官
法令係長 行政事務官

憲法第五十七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生한 左記 命令은 十二月十三日 同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同條第三項의 規定에 依하여 茲에 公布한다

記

一、大統領令(緊急命令第十一號) 地稅에 關한 臨時措置令

大統領 李 承晩 印

檀紀四千二百八十四年一月十八日

國務委員
國務總理署理 國防部長官 申性模
內務部長官 趙炳玉
外務部長官 林炳稷
財務部長官 崔亨周
法務部長官 金俊淵
文敎部長官 白樂濬
農林部長官 孔鎭恒
商工部長官 金勳
社會部長官 許政
保健部長官 吳漢泳
國務委員 金錫寬
國務委員 張基永
國務委員 李允榮

0206
CC 79